

대 만	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2014년 9월 17일) / 홍콩aT센터

구분(택1)	핵심 내용
(*통관) (*검역) (*라벨링) ✓(*기타)	<input type="checkbox"/> “불량돼지기름 파동사건” 현황보고 및 정부조치 내용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
주요 내용

○ 사건 개요

- 強冠업체는 음식물쓰레기에서 회수한 폐유, 홍콩산 돼지기름 및 기타 저질 기름을 혼합하여 <전통향돼지유(全統香豬油)> 782톤 제조, 각 식품업체로 유통 중 적발(9.4)
- <전통향돼지유>는 총 235개 식품 업체로 공급(후기가공업체 포함 1,020업체), 250종류의 식품으로 제조되어 시장 내 유통되었고 420.60톤이 회수 또는 폐기처리 됨(9.12)
- 홍콩업체(GLOBALWAY CORP. LTD)에서 수입한 사료용 돼지기름(87톤)을 식용유로 둔갑시켜 수입하여, <全統香豬油> 제조 혼합 의 별도 시장 유통건 조사 결과 총 187개 상품에 사용되어 회수 또는 폐기처리 됨(9.15)
- 味全, 奇美, 하이라이프 등 식품 대기업 상품 및 홍콩과도 연관되어 사건 여파가 상당히 큼

○ 정부조치

1. 식용유 관련 업자 시스템 전면 등록 의무화(2014.10.31.까지), 전면 조사 및 정기검사 실시(2014.10.31.부터)
2. 6대 식품업 강화 관리 정책 실시
 - 향후 30개월 이내 식품공장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 발체 위생 검사 실시, 식품위생규범(GHP) 준수 요구
 - 5대 식품업(수산물, 육류 및 유제품 가공품, 식품첨가물, 특수영양식품)은 2014.12.31부터 원재료, 반완성품, 완성품 대상 정기 위생 검사 실시
 - 공장등기, 식품 제조, 가공, 요식업, 수입, 판매 등 모든 식품업자는 2014.12.31.전까지 시스템 등록 의무화
 - 8대 식품업자 2015.2.5.일부터 취급식품의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의 출처·행방 관련 증빙자료 등록의무화
 - 불법업체에 구형한 벌금의 5~10%를 해당 불법 식품 신고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
 - 불법식품업자의 범칙금은 <식품안전보호기금>으로 운영되며 향후 식품위생사건 등의 소비자 소송비용으로 사용됨
3. 불법 업체 및 상품 처리 조치
 - 관련 상품 제조, 가공, 판매 일체 정지, 위생국에 처리 상황 통보의무화
 - 관련 상품 전면 회수 및 폐기 조치
 - 관련 상품 구입 소비자의 환불 조치
 - 홍콩에서 수입되는 식용 돼지기름 수입금지, 중국, 홍콩, 마카오 유통품 전수검사 및 위생증빙자료 제출
4. 제재조치
 -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제조, 조제, 가공 위조 시 NT\$800~8000만불(한화 약 280~2,800백만원)의 벌금 구형 가능
 - 동법 제 44조에 의거 NT\$6~NT\$5000만불(한화 약 2 ~ 1,750백만원) 구형 가능
 - 기간 내 미처리 및 기타 조치 위반 시 동법 제 47조 규정에 의거 NT\$3~NT\$300만불(한화 약 1 ~ 105 백만원) 구형 가능

시사점 / 대처 방향

- 음식물쓰레기에서 회수한 폐유, 저질 돼지기름 등의 유통으로 인해 대만 내 식품 위생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져, 식품 위생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對 대만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함
- 관련 웹사이트 : <http://www.fda.gov.tw/TC/site.aspx?sid=4093#1>

발표 일자/ 출처 : 2014년 9월 4일 ~ 15일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(FDA) 공고